

< 정 오 표 >

1. 정정대상 투자신탁 : 유리Daily인덱스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형]
2. 효력발생예정일(변경시행일) : 2016.12.27.
3. 정정사항 : 모자형집합투자기구조로 변경, 집합투자업자보수율 인하

[규약]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제2조(용어의 정의)	<p>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각호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p> <p>1. ~ 9. (생 략)</p> <p>10. < 신 설 ></p>	<p>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각호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p> <p>1. ~ 9. (현행과 동일)</p> <p>10. "모자형"이라 함은 다른 집합투자기구(모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자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는 구조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p>
제3조(투자신탁의 명칭 및 종류)	<p>① 이 투자신탁의 명칭은 "유리Daily인덱스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형]"라 한다.</p> <p>② 이 투자신탁은 다음 각호의 형태를 갖는 집합투자기구조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투자신탁 2. 증권(주식-파생형) 3. 개방형 4. 추가형 <p>5. < 신 설 ></p> <p>③ < 신 설 ></p>	<p>① 이 투자신탁의 명칭은 "유리Daily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주식-파생형]"라 한다.</p> <p>② 이 투자신탁은 다음 각호의 형태를 갖는 집합투자기구조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투자신탁 2. 증권(주식-파생형) 3. 개방형 4. 추가형 <p>5. 모자형</p> <p>③ 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유리KOSPI200인덱스증권모투자신탁 [주식-파생형]
제16조(투자목적)	<p>이 집합투자기구는 국내주식 및 국내주식관련장내파생상품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이 집합투자기구는 국내 주식 및 주식관련장내파생상품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제17조(투자대상자산 등)	<p>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주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법 제9조제15항제3호의 주권상장법인 중 유가증권시장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이 발행한 것 및 유가 	<p>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3조제3항의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 2. 법시행령 제268조제4항에 따른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p>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p>

	<p>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에 한한다.) 단, 법 제 196조에 의하여 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주식”이라 한다)</p> <p>2.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사채권(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BBB-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이하“채권”이라 한다)</p> <p>3.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이하“자산유동화증권”이라 한다)</p> <p>4.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으로서 만기가 1년 이내이고 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3-이상인 것 및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이하“어음 등”이라 한다)</p> <p>5.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가지수 선물, 주가지수옵션, 주식선물, 주식옵션, 코스닥지수선물, 코스닥지수옵션, CD금리선물, 통안증권금리선물, 국채선물 및 국채선물옵션 (이하“주식및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이라 한다)</p> <p>6. 금리스왑거래</p> <p>7.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 제189조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한 수익</p>	<p><u>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u></p> <p>1. <u>법 시행령 제83조 제3항의 금융기관에 대한 30일 이내의 단기대출</u></p> <p>2. <u>만기가 1년 이내인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에의 예치</u></p>
--	---	--

	<p>증권 및 법 제196조에 의하여 투자 회사가 발행한 주식(이하“집합투자 증권 등”이라 한다)</p> <p>8.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는 증권의 대여</p> <p>9. 환매조건부채권매도(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p> <p>10. 증권의 차입</p> <p>11. 법 시행령 제83조 제3항의 금융기관에 대한 30일 이내의 단기대출</p> <p>12. 만기가 1년 이내인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에의 예치</p> <p>13. 법시행령 제268조 제4항에 따른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p> <p>14.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p>	
<p>제18조(투자한도)</p>	<p>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식 및 주식관련장내파생상품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으로 한다. 2. 채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로 한다. 3. 어음 등예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로 한다. 4. 자산유동화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로 한다 5. 금리스왑거래는 거래시점에서 교환하는 약정이자의 산출근거가 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의 총액이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 총액의 100% 이하가 되도록 한다. 6. 파생상품에의 투자는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도록 한다. 7. 집합투자증권 등예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 이하로 한다. 	<p><u>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운용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모투자신탁 수익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90% 이상으로 한다.</u> 2. <u>제17조제2항 각호의 방법으로서의 운용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 이하로 한다. 단, 본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들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의 범위 내에서 10%를 초과할 수 있다.</u>

	<p>다만,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 하여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 까지 투자할 수 있다.</p> <p>8. 증권의 대여는 투자신탁이 보유하 는 증권총액의 50% 이하로 한다.</p> <p>9. 환매조건부채권의 매도는 투자신탁 이 보유하는 채권 총액의 50% 이 하로 한다.</p> <p>10.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증권의 차입은 투자신탁 자산총액 의 20% 이하로 한다.</p>	
<p>제19조(운용 및 투자 제한)</p>	<p>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 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 다만, 법령 및 규정 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 과하여 법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 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과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 는 행위(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 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다.)</p> <p>가. 법 시행령 제83조 제3항의 금융기관에 대한 30일 이내 의 단기대출</p> <p>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 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 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 한다)</p> <p>2.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 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 권 및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 며,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 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 채권, 예금, 그 밖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 한 증권 중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에</p>	<p><u>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 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 다만, 법령 및 규정 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p> <p><u>1.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 과하여 법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 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과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 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 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다.</u></p> <p><u>가. 법 시행령 제83조 제3항의 금융기관에 대한 30일 이내 의 단기대출</u></p> <p><u>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 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 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 한다)</u></p>

탁증권을 포함한다)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의 것은 제외한다) 및 직접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

다),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 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 및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행위

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가총액비중이 10%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비중까지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별로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한다.

라. 동일종목의 증권에 법 제234조 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행위

3.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4.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5.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p>6. 법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법 제189조의 수익증권, 그 밖에 법시행령 제86조 제2항에서 정하는 증권을 제외하며, 계열회사가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한 증권예탁증권 및 법시행령 제86조제3항에서 정하는 투자대상자산을 포함한다)을 취득하는 행위</p> <p>7. 투자신탁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행위</p>	
<p>제20조(한도 및 제한의 예외)</p>	<p>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8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회계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계약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제18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p>②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등 법시행령 제81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18조제5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9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보며, 금융투자</p>	<p><u>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8조제1호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u> 2. <u>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회계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u> 3. <u>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계약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u> 4. <u>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u> 5. <u>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제18조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u>

	<p>업규정 제4-5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제19조제6호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운용하여야 한다.</p> <p>③ 제19조제2호 본문 및 제4호 및 5호의 투자비율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1개월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p> <p>④ 집합투자업자는 투자대상자산의 신용평가등급이 제17조에서 정한 신용평가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해당자산을 신용평가등급의 최초하락일로부터 3개월 이내 처분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부도 등으로 3개월 이내에 해당 투자대상자산의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한다.</p>	
제25조의2(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	<u>< 신 설 ></u>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달리 운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금을 납입한 당일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26조의2(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 청구)	<u>< 신 설 ></u>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한 경우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대금으로 환매에 응하지 않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이 투자신탁이 보유 중인 현금 등으로 환매에 충분히 응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7조(수익자총회)	<p>①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두며, 수익자총회는 법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다.</p> <p>② ~ ⑧ (생 략)</p> <p>⑨ <u>< 신 설 ></u></p>	<p>①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두며, 수익자총회는 <u>법령(또는 신탁계약) 및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 개최 사유 중 이 투자신탁 수익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한하여</u> 결의할 수 있다.</p> <p>② ~ ⑧ (현행과 동일)</p> <p>⑨ <u>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가 개최되고,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목적이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와 동일한 시간 및 장소에서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u></p>
제39조(보수)	① ~ ② (생 략)	① ~ ② (현행과 동일)

	<p>③ 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호의 보수율에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p> <p><u>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5.20</u></p> <p>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3.00</p> <p>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35</p> <p>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5</p>	<p>③ 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호의 보수율에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p> <p><u>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4.33</u></p> <p>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3.00</p> <p>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35</p> <p>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5</p>
<p>제39조의2(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에 대한 보수 지급)</p>	<p><u>< 신 설 ></u></p>	<p><u>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신탁업자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가 상이할 경우 이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신탁업자보수 중 5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보수"라 한다)을 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모투자신탁 및 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가 다수일 경우 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보수를 이 투자신탁이 투자한 해당 모투자신탁의 평가액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각 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에게 지급한다.</u></p>

[투자설명서]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유리Daily인덱스증권 투자신탁 [주식-파생형]	유리Daily인덱스증권 자투자신탁 [주식-파생형]
제1부.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가. ~ 라. (생 략) <u>마. < 신 설 ></u>	가. ~ 라. (현행과 동일) <u>마. 특수형태 표시</u> <u>-모자형(모투자신탁이 발행하는 수익증권을 자투자신탁이 취득하는 구조의 투자신탁)</u>
제2부.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증권(주식-파생형), 투자신탁, 개방형, 추가형 <u>나. < 신 설 ></u>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증권(주식-파생형), 투자신탁, 개방형, 추가형, <u>모자형</u> <u>나. 모자형 구조</u> <u>이 집합투자기구는 법 제233조에 의거한 모자형집합투자기구로서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집합투자신탁 내의 다른 모 또는 자투자신탁은 아래와 같습니다.</u>
제2부.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주된 투자대상자산을 국내주식 및 국내주식관련파생상품으로 하여, KOSPI200(목표주가지수)에 근접한 수익률을 추구하되 제한적 범위 내에서 KOSPI200 대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 및 주식관련장내 파생상품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여 KOSPI200 (목표주가

	비 초과수익을 추구하는 전략을 통해 자본이득 등을 추구합니다.	지수)에 근접한 수익률을 추구하되 제한적 범위 내에서 KOSPI200 대비 초과수익을 추구하는 전략을 통해 자본이득 등을 추구합니다.
제2부.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생 략) 나. 투자제한 (생 략)	가. 투자대상 정정사항 반영 및 '모투자신탁의 투자대상' 추가 나. 투자제한 정정사항 반영 및 '모투자신탁의 투자제한' 추가
제2부.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생 략) 나. 수익구조 (생 략)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유리KOSPI200인덱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파생형)"에 투자하여 운용합니다. 유리KOSPI200인덱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파생형)은 국내 주식 및 주식관련파생상품에 주로 투자하여 KOSPI200 지수와 유사한 수준의 수익을 추구합니다.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추가 나.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은 이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인 "유리KOSPI200인덱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파생형)" 수익증권에 대부분을 투자하므로 이러한 모투자신탁의 수익구조는 모투자신탁의 투자비율만큼 당해 투자신탁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모투자신탁의 수익구조' 추가
제2부.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생 략) 다음의 투자위험은 본 자료 작성시점 현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위험을 기재한 것으로서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을 기재한 것은 아님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생 략)	(현행과 동일) 이 투자신탁은 자산의 대부분을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므로 모투자신탁의 투자위험은 이 투자신탁의 투자위험으로 이전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음의 투자위험은 이 투자신탁이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으며 본 자료 작성시점 현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위험을 기재한 것으로서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을 기재한 것은 아님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현행과 동일)
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집합투자업자 보수 : 연 0.520%	집합투자업자 보수 : 연 0.433%

[간이투자설명서]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I. 집합투자기구 특징	국내주식 및 주식관련장내파생상품에 60% 이상 투자하여 KOSPI200 지수와 유사한 성과를 추종하면서 시장 대비 일정 범위 내에서 초과 수익을 추구하는 인덱스 전략 수행	KOSPI200 지수와 유사한 성과를 추종하면서 시장 대비 일정 범위 내에서 초과 수익을 추구하는 인덱스 전략을 수행하는 모투자신탁에 90% 이상 투자하여 수익 추구
I. 분류	투자신탁, 증권(주식-파생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	투자신탁, 증권(주식-파생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 모자형
I. 보수(연, %)	집합투자업자보수: 0.52 총보수·비용: 0.873	집합투자업자보수: 0.433 총보수·비용: 0.786
II. [1] 투자전략, 1.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 및 국내주식관련 파생상품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이 투자신탁의 순자산가치의 변동률이 KOSPI200 지수의 변동률과 유사하도록 운용하되 제한된 범위 내에서 KOSPI200 지수 대비 초과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 및 주식관련장내 파생상품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이 투자신탁의 순자산가치의 변동률이 KOSPI200 지수의 변동률과 유사하도록 운용하되 제한된 범위 내에서 KOSPI200 지수 대비 초과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II. [1] 투자전략, 2.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생 략)	이 투자신탁은 '유리KOSPI200인덱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파생형]'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90% 이상을 투자합니다.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추가